

주유소 상표표시제 시행 지침

– 동력자원부 –

1. 목적

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등의 상표표시제도 확립을 위하여 '92. 1. 28 별첨『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 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』의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업계별 조치하여야 할 세부업무 처리내용 등을 정함.

2. 상표표시제 시행 세부내용

- 대상사업자 : 주유소 · 대리점 · 정유사
- 대상유종 : 휘발유, 등유, 경유
- 상표의 사용 및 표시
 - 1업소당 1정유사 상표만 사용
 - * 정유사 상표표시를 하지 않는 업소도 인정(정유사 상표제시 불가)
-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 : 현행 제품공급계약서를 사용하되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기할 것.
- 업소의 상표표시 또는 게시방법
 - 기본원칙 :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에 의하여 표시
 - 표시장소 · 간판종류 : 지주이용간판, 캐노피에 부착한 간판, 옥상간판, 주유기, 유조차
 - 주유소건물 · 담장등의 벽면도색 표시는 불가 함. 다만, 기존 주유소중 현행 표시된 것과 상표표시가 일치하게 될 경우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주유소 재도색시나 신규 주유소

의 경우는 벽면이용 표시는 불가함.

– 표시내용

- 주주이용간판, 캐노피, 옥상간판 : 『정유사별 상표법에 의한 등록상표와 주유소 명칭』을 기본원칙으로 하며, 이외에는 『옥외광고물등관리법』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응용하여 표시 가능
- 주유기, 유조차 : 정유사 상표 또는 정유사 명칭만 사용가능

○ 시행시기

- '92. 4. 1부터 시행하되 3개월간의 업계지도 계몽기간 설정
- '92. 7. 1부터 업소단속실시 및 위반업소 처벌

3. 기관별 세부시행내용

가. 업계(주유소 · 대리점 · 정유사)

(1) 주유소 · 대리점

- 상표표시제를 시행 할 업소는 '92. 2. 29까지 각각 대리점 · 정유사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후 허가 관청(시 · 도 또는 시 · 군)에 동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신고하고, 동내용을 관련협회에도 통보하여야 함.
- 상표표시 간판제작 설치 : '92. 3. 31까지 상기 『업소의 상표표시 또는 게시방법』에 따른 업소의 상표표시 간판을 제작설치 완료할 것.
- 상표표시제 미설치 업소는 업소내의 정유사 상

표표시 또는 게시물 제거(주유소를 표시·안내하는 명칭등의 사용은 가능)

(2) 정유사

- 휘발유, 등유, 경유에 대한 자기회사 제품 생산규격(품질수준)을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규격 항목에 준하여 2개이상 일간지(경제지포함)에 공시하고, 당부 및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'92. 3. 15까지 보고할 것(규격 변경시에도 같은 요령으로 5일이내에 공시 및 보고).

- 상표표시 업소에도 이를 게시할 것.

- 기준일 현재 영업중인 업소를 대상으로 상표표시 계약 체결 현황을 분기별로 매분기 익월 10일까지

- 보고양식

구 분	영업업소수	상 표 표 시 업 소 수							미표사업소
		유공	호유	경인	쌍용	극동	기타	소계	
주 유 소 대 리 점									

- 상표표시제 시행신고 업체가 '92. 3. 31까지 상표 표시 간판을 설치완료했는지 여부확인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.

- '92. 3. 31 이후 상표표시제 미실시 업소가 업소에 정유사 상표를 표시 또는 게시한 『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』의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철거토록 조치할 것.

다. 한국석유품질검사소

- 상표표시업소에 대한 단속 및 품질검사 방안과 미

석유협회에 보고하고, 석유협회는 이를 5일이내에 당부에 보고할 것.

- 최초 보고는 '92. 2. 29 기준으로 3.15까지 당부에 보고

나. 시·도(시·군)

- 대리점, 주유소의 제품공급계약사본을 '92. 2. 29 까지 접수하고, 상표표시제 시행업소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감독할 것.
- 반기별 판매업소 변동사항 보고내용에 상표표시제 시행업소 현황을 추가하여 보고(최초보고는 2.29을 기준으로 3.15까지 보고)

도서안내

석유의 이모저모

-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-